|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  **대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제60호  세무행정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진일보 추진시키고,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의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표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기업에 적용)  2.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개인에 적용됨)  3.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A표)  4.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A표)  5.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B표)  6.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B표)  7.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C표)  8.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C표)  9.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D표)  10.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D표)  11. 폐지문건내용명세표  첨부 다운로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5/n1465977/n1466022/c1949446/content.html>  국가세무총국  2015년8월27일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세수처리 포함, 이하 “세수협정”으로 총칭),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항공협정 세수조항, 해운협정 세수조항, 자동차운송협정 세수조항, 상호 면제되는 국제운송수입 세수협의 또는 교환문서(이하 “국제운송협정”으로 총칭)을 집행하고,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협정대우 관리를 규범화시키고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실시세칙(이하 “국내세수법률규정”으로 총칭)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 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협정 대우란, 세수협정 또는 국제운송협정,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향유조건에 부합될 경우, 납세 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원천징수신고 시, 스스로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세무기관의 후속관리를 받는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관세무기관이란,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내 납세의무에 대하여 징수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비주민납세자란, 국내세수법률규정 또는 세수협정에 따라 중국 세수주민에 속하지 않는 납세자(비주민기업과 비주민개인 포함)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을 가리키며, 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지정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제2장 협정의 적용 및 납세신고  제5조 비주민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사실대로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지정원천징수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고, 협정대우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경우 주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고, 관련 보고서에 작성한 정보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신고 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전달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릴 필요가 있는 협정대우를 제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관련 보고서에 작성된 정보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수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한다.  제7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납세신고 시 스스로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 시 아래의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첨부1, 첨부2 참조).  (2)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첨부3~첨부10 참조).  (3) 협정체약 상대방 세무주관당국이 납세신고 또는 원친징수신고 전 양력년도 개시 이후 발급한 세수주민신분증명서, 세수협정 국제운송조항 대우 또는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리는 기업은 체약상대방 운송주관부문이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신고 전 양력년도 개시 이후 발급한 법인증명으로 세수주민신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고,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리는 개인은 체약상대방 정부가 발급한 여권 사본으로 세수주민신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4) 취득한 소득과 관련된 계약서, 협의서,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지급증빙 등 권리귀속 증명자료  (5) 기타 세수규범성 문건이 규정한 비주민납세자가 특정조항의 세수협정 대우 또는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릴 경우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  비주민납세자는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협정대우의 근거협정조항이 상이한 경우, 다음의 요구에 따라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각각 제출한다.  (1) 비주민납세자가 세수협정의 독립적 개인용역, 비독립적 개인용역(피고용소득), 정부서비스, 교사, 연구인원 및 학생 조항의 대우를 누릴 경우, 최초로 관련소득을 취득하고, 납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고 보고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는 동일한 주관세무기관에 동일한 조항의 협정대우를 누리는 경우에는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주민납세자가 세수협정의 고정사업장과 영업이익, 국제운송, 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퇴직금조항 대우, 또는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관련 납세연도에 최초 납세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납세연도 최초 원천징수신고 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고 보고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는 관련 보고서와 자료 제출일자에 속하는 년도부터 3년 내 동일한 주관세무기관에 동일한 조항의 협정대우를 누리는 경우에는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비주민납세자가 세수협정의 재산수익, 연예인, 운동선수 및 기타소득조항 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매회 납세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 신고 시,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리고자 신고하기 전 이미 기타 비주민납세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본 방법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계약서, 협의서,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지급증빙 등 소유권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주관세무기관에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대우혜택을 신고할 때 상술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료는 중문 원문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 자료 원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방법 제7조 제3항~제5항에 규정된 관련 증명 또는 자료의 사본을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에 원본의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보고서 책임자 인감날인 또는 서명하여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본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비주민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경영항목, 영업장소 또는 용역제공 항목에 대해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본 방법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및 지정원천징수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에게 다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각자에게 본 방법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각 원천징수의무자는 협정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할 경우,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한다.  제12조 비주민납세자는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 작성정보와 기타 자료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주민납세자가 제공한 보고서와 자료에 근거하여 협정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경우, 비주민납세자의 관련 정보 작성 및 제공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제13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대우 혜택을 받아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제14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않고, 또한 협정대우혜택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기한 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주관세무기관에 환급을 요구하고, 동시에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 및 협정대우혜택을 받는 상황설명서를 보충제출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사실확인을 하고,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혜택을 받은 후, 상황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다음번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번 원천징수신고 시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협정대우혜택을 받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진 신고한 상황에서, 상황이 변경된 날부터 받던 관련 협정대우혜택을 즉시 정지하고,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및 지정원천징수 상황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주민납세자가 더 이상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거나 발견할 경우,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장 세무기관의 후속관리  제16조 각급 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받는 협정대우혜택에 대한 후속관리 강화를 통해, 세수협정과 국제운송협정을 정확히 집행하고, 협정남용 및 탈세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제17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 조사확인업무 과정 중 보고서와 자료에 근거하여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혜택을 받는 조건에 부합되거나 비주민납세자에게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경우,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 내 기타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비주민납세자가 받는 협정대우혜택의 후속관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확인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후속조사의 회피, 거절 또는 방해하여, 주관세무기관이 협정대우의 향유 조건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한 내 세금납부를 하도록 비주민납세자에게 명령해야 한다.  제19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에 대한 조사확인업무 과정에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 될 경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호협상 또는 정보교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제20조 본 방법 제14조에서 서술한 조사확인 시간은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충 제공한 자료, 특정 요청사안, 상호협상, 정보교환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이 상술한 원인으로 조사확인 시간을 연장할 경우, 세금환급 신청인에게 관련 결정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 중,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협정대우를 누려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한 것을 발견한 경우 비주민납세자에게 기한 내 세금을 보충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세금을 미납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원천의 기타 소득금액 중 해당 비주민납세자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징하거나, 세수징수관리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 중, 세수협정 또는 국내세수법률규정상 일반적 반탈세규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발견할 경우 일반적 반탈세 조사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부당하게 협정대우를 누린 상황에 대한 신용파일을 만들고, 상응하는 후속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이 본 방법과 연관된 각종 처리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주민납세자는 세무기관이 세수협정대우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세수협정에 의거하여 세무주관당국에 상호협상을 제청할 수 있다. 비주민납세자가 세무주관당국에 상호협상을 제청할 경우, 세수협정 상호협상 절차조항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부 칙  제25조 세수협정이나 국제운송협정 또는 국가세무총국과 세수협정 또는 국제운송협정 체약상대방의 주관당국이 상호협상을 통해 형성한 세수협정 또는 국제운송협정 집행 관련 협의(이하 “주관당국간 협의”로 약칭)와 본 방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 세수협정이나 국제운송협정 또는 주관당국간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이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9]124호),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이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시범시행)> 유관문제에 관한 보충통지(국세함[2010]290호), <국가세무총국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간 소득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처리> 집행 관련 주민신분 인증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53호),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기업의 국제운송업무 세수관리 잠행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37호) 제11조~제15조 및 <국가세무총국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간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 관련 처리> 유관 조문 해석 및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7]403호)의 유관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11 참조)  제27조 본 방법의 시행일 전, 비주민이 이미 유관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완성하고,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게 허가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집행한다. 본 방법 시행 전 발생하였으나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0号  　　为进一步推进税务行政审批制度改革，优化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的管理，国家税务总局制定了《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现予公布。  　 特此公告。  　　附件：  1.非居民纳税人税收居民身份信息报告表（企业适用）  2.非居民纳税人税收居民身份信息报告表（个人适用）  3.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A表）  4.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A表）  5.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B表）  6.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B表）  7.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C表）  8.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C表）  9.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D表）  10.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D表）  11.废止文件内容明细表  附件下载：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5/n1465977/n1466022/c1949446/content.html>  国家税务总局  2015年8月27日  **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  **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执行中华人民共和国政府对外签署的避免双重征税协定（含与香港、澳门特别行政区签署的税收安排，以下统称税收协定），中华人民共和国对外签署的航空协定税收条款、海运协定税收条款、汽车运输协定税收条款、互免国际运输收入税收协议或换函（以下统称国际运输协定），规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以下简称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以下统称国内税收法律规定）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发生纳税义务的非居民纳税人需要享受协定待遇的，适用本办法。  本办法所称协定待遇，是指按照税收协定或国际运输协定可以减轻或者免除按照国内税收法律规定应当履行的企业所得税、个人所得税纳税义务。  第三条 非居民纳税人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可在纳税申报时，或通过扣缴义务人在扣缴申报时，自行享受协定待遇，并接受税务机关的后续管理。  第四条 本办法所称主管税务机关，是指按国内税收法律规定，对非居民纳税人在中国的纳税义务负有征管职责的国家税务局或地方税务局。  本办法所称非居民纳税人，是指按国内税收法律规定或税收协定不属于中国税收居民的纳税人（含非居民企业和非居民个人）。  本办法所称扣缴义务人，是指按国内税收法律规定，对非居民纳税人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负有扣缴税款义务的单位或个人，包括法定扣缴义务人和企业所得税法规定的指定扣缴义务人。  第二章 协定适用和纳税申报  第五条 非居民纳税人自行申报的，应当自行判断能否享受协定待遇，如实申报并报送本办法第七条规定的相关报告表和资料。  第六条 在源泉扣缴和指定扣缴情况下，非居民纳税人认为自身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需要享受协定待遇的，应当主动向扣缴义务人提出，并向扣缴义务人提供本办法第七条规定的相关报告表和资料。  非居民纳税人向扣缴义务人提供的资料齐全，相关报告表填写信息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扣缴义务人依协定规定扣缴，并在扣缴申报时将相关报告表和资料转交主管税务机关。  非居民纳税人未向扣缴义务人提出需享受协定待遇，或向扣缴义务人提供的资料和相关报告表填写信息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扣缴义务人依国内税收法律规定扣缴。  第七条 非居民纳税人需享受协定待遇的，应在纳税申报时自行报送或由扣缴义务人在扣缴申报时报送以下报告表和资料：  （一）《非居民纳税人税收居民身份信息报告表》（见附件1、附件2）；  （二）《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见附件3至附件10）；  （三）由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在纳税申报或扣缴申报前一个公历年度开始以后出具的税收居民身份证明；享受税收协定国际运输条款待遇或国际运输协定待遇的企业，可以缔约对方运输主管部门在纳税申报或扣缴申报前一个公历年度开始以后出具的法人证明代替税收居民身份证明；享受国际运输协定待遇的个人，可以缔约对方政府签发的护照复印件代替税收居民身份证明；  （四）与取得相关所得有关的合同、协议、董事会或股东会决议、支付凭证等权属证明资料；  （五）其他税收规范性文件规定非居民纳税人享受特定条款税收协定待遇或国际运输协定待遇应当提交的证明资料。  非居民纳税人可以自行提供能够证明其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其他资料。  第八条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根据协定条款的不同，分别按如下要求报送本办法第七条规定的报告表和资料：  （一）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独立个人劳务、非独立个人劳务（受雇所得）、政府服务、教师和研究人员、学生条款待遇的，应当在首次取得相关所得并进行纳税申报时，或者由扣缴义务人在首次扣缴申报时，报送相关报告表和资料。在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且所报告信息未发生变化的情况下，非居民纳税人免于向同一主管税务机关就享受同一条款协定待遇重复报送资料。  （二）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常设机构和营业利润、国际运输、股息、利息、特许权使用费、退休金条款待遇，或享受国际运输协定待遇的，应当在有关纳税年度首次纳税申报时，或者由扣缴义务人在有关纳税年度首次扣缴申报时，报送相关报告表和资料。在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且所报告信息未发生变化的情况下，非居民纳税人可在报送相关报告表和资料之日所属年度起的三个公历年度内免于向同一主管税务机关就享受同一条款协定待遇重复报送资料。  （三）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财产收益、演艺人员和运动员、其他所得条款待遇的，应当在每次纳税申报时，或由扣缴义务人在每次扣缴申报时，向主管税务机关报送相关报告表和资料。  第九条 非居民纳税人在申报享受协定待遇前已根据其他非居民纳税人管理规定向主管税务机关报送本办法第七条第四项规定的合同、协议、董事会或股东会决议、支付凭证等权属证明资料的，免于向同一主管税务机关重复报送，但是应当在申报享受协定待遇时说明前述资料的报送时间。  第十条 按本办法规定填报或报送的资料应采用中文文本。相关资料原件为外文文本的，应当同时提供中文译本。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可以以复印件向税务机关提交本办法第七条第三项至第五项规定的相关证明或资料，但是应当在复印件上标注原件存放处，加盖报告责任人印章或签章，并按税务机关要求报验原件。  第十一条 非居民纳税人自行申报的，应当就每一个经营项目、营业场所或劳务提供项目分别向主管税务机关报送本办法规定的报告表和资料。  源泉扣缴和指定扣缴情况下，非居民纳税人有多个扣缴义务人的，应当向每一个扣缴义务人分别提供本办法规定的报告表和资料。各扣缴义务人在依协定规定扣缴时，分别向主管税务机关报送相关报告表和资料。  第十二条 非居民纳税人对本办法第七条规定报告表填报信息和其他资料的真实性、准确性负责。扣缴义务人根据非居民纳税人提供的报告表和资料依协定规定扣缴的，不改变非居民纳税人真实填报相关信息和提供资料的责任。  第十三条 非居民纳税人发现不应享受而享受了协定待遇，并少缴或未缴税款的，应当主动向主管税务机关申报补税。  第十四条 非居民纳税人可享受但未享受协定待遇，且因未享受协定待遇而多缴税款的，可在税收征管法规定期限内自行或通过扣缴义务人向主管税务机关要求退还，同时提交本办法第七条规定的报告表和资料，及补充享受协定待遇的情况说明。  主管税务机关应当自接到非居民纳税人或扣缴义务人退还申请之日起30日内查实，对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办理退还手续。  第十五条 非居民纳税人在享受协定待遇后，情况发生变化，但是仍然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应当在下一次纳税申报时或由扣缴义务人在下一次扣缴申报时重新报送本办法第七条规定的报告表和资料。  非居民纳税人情况发生变化，不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在自行申报的情况下，应当自情况发生变化之日起立即停止享受相关协定待遇，并按国内税收法律规定申报纳税。在源泉扣缴和指定扣缴情况下，应当立即告知扣缴义务人。扣缴义务人得知或发现非居民纳税人不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应当按国内税收法律规定履行扣缴义务。    第三章 税务机关后续管理  第十六条 各级税务机关应当通过加强对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的后续管理，准确执行税收协定和国际运输协定，防范协定滥用和逃避税风险。  第十七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或税款退还查实工作过程中，发现依据报告表和资料不足以证明非居民纳税人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或非居民纳税人存在逃避税嫌疑的，可要求非居民纳税人或扣缴义务人限期提供其他补充资料并配合调查。  第十八条 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应配合税务机关进行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的后续管理与调查。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拒绝提供相关核实资料，或逃避、拒绝、阻挠税务机关进行后续调查，主管税务机关无法查实是否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应视为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责令非居民纳税人限期缴纳税款。  第十九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或税款退还查实工作过程中，发现不能准确判定非居民纳税人是否可以享受协定待遇的，应当向上级税务机关报告；需要启动相互协商或情报交换程序的，按有关规定启动相应程序。  第二十条 本办法第十四条所述查实时间不包括非居民纳税人或扣缴义务人补充提供资料、个案请示、相互协商、情报交换的时间。税务机关因上述原因延长查实时间的，应书面通知退税申请人相关决定及理由。  第二十一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过程中，发现非居民纳税人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而享受了协定待遇，并少缴或未缴税款的，应通知非居民纳税人限期补缴税款。  非居民纳税人逾期未缴纳税款的，主管税务机关可依据企业所得税法从该非居民纳税人来源于中国的其他所得款项中追缴该非居民纳税人应纳税款，或依据税收征管法的有关规定采取强制执行措施。  第二十二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过程中，发现需要适用税收协定或国内税收法律规定中的一般反避税规则的，可以启动一般反避税调查程序。  第二十三条 主管税务机关应当对非居民纳税人不当享受协定待遇情况建立信用档案，并采取相应后续管理措施。  第二十四条 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对主管税务机关作出的涉及本办法的各种处理决定不服的，可以按照有关规定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  　 非居民纳税人对主管税务机关作出的与享受税收协定待遇有关处理决定不服的，可以依据税收协定提请税务主管当局相互协商。非居民纳税人提请税务主管当局相互协商的，按照税收协定相互协商程序条款及其有关规定执行。  第四章 附 则  第二十五条 税收协定、国际运输协定或国家税务总局与税收协定或国际运输协定缔约对方主管当局通过相互协商形成的有关执行税收协定或国际运输协定的协议（以下简称主管当局间协议）与本办法规定不同的，按税收协定、国际运输协定或主管当局间协议执行。  第二十六条 本办法自2015年1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09〕124号）、《国家税务总局关于〈非居民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试行）〉有关问题的补充通知》（国税函〔2010〕290号）、《国家税务总局关于执行〈内地和香港特别行政区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安排〉有关居民身份认定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53号）、《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企业从事国际运输业务税收管理暂行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37号）第十一条至第十五条以及《国家税务总局关于〈内地和香港特别行政区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安排〉有关条文解释和执行问题的通知》（国税函〔2007〕403号）的有关内容同时废止（详见附件11）。  第二十七条 本办法施行之日前，非居民已经按照有关规定完成审批程序并准予享受协定待遇的，继续执行到有效期期满为止。本办法施行前发生但未作税务处理的事项，依照本办法执行。 |